##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69 발의연월일: 2020. 7. 1.

발 의 자 : 양이원영・우원식・이탄희

윤미향 · 용혜인 · 이동주

전혜숙ㆍ허 영ㆍ이낙연

남인순 · 김성환 · 정청래

박성준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그런데, '징계권(懲戒權)'이라는 표현은 자녀를 부모의 권리행사 대상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권위적인 표현이고, 자칫하면 징계권 규정이자녀에 대한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규정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 특히, 최근 발표된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의 권고문에 따르면 징계권 조문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수렴됨.

이에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고, 자녀에 대한 체벌 금지를 명시함으로 써 아동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환경과 포용적인 가족문화의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13조제2항, 제915조 및 924조의2).

법률 제 호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친권자는 자녀에게 어떠한 형태의 체벌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15조를 삭제한다.

제924조의2 중 "지정이나 징계,"를 "지정이나"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913條(保護, 教養의 權利義務)	第913條(保護,教養의 權利義務)
(생 략)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음)
<u>&lt;신 설&gt;</u>	② 친권자는 자녀에게 어떠한
	형태의 체벌도 가하여서는 아
	<u>니 된다.</u>
第915條(懲戒權) 親權者는 ユ 子	<u>&lt;</u> 삭 제>
를 保護 또는 敎養하기 爲하여	
必要한 懲戒를 할 수 있고 法	
院의 許可를 얻어 感化 또는	
矯正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가정법원은 거소의 <u>지정</u>	선고) <u>지정</u>
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	이나
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	
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	
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	
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	
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	

고할	수	있다.

-----